

# 조선시대 초기 실학파의 복식관

— 한백겸, 유형원, 이익을 중심으로 —

정 혜 경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 A View of Costume in the Early Practical Science School in Chosun Dynasty

Hye Gyung Chung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yungnam University

(1996. 6. 22 접수)

### Abstract

This study is a research for an idea of costume containing clothing system in the early Practical Science School.

The result are described as follows :

1. Bak-Kyem, Han got a critical thought and attitude to seek for practical and rational aspect. Because that he studied an original text and wanted to find a basic meaning. And the result, he made a Pang-Ryeong Symeui.
2. Hwyeong-won, Rue contended that we had to model after chinese costume system to seek for a correct clothing system to harmonize with our culture and regulation. And he sought for the original courtesy because that his basic idea of reformation in the clothing system was an ancient system. But when there was a remedy, he suggested a new system.
3. Ik, lee considered a clothing system with a critical and investigated attitude. In the clothing system, he wanted to keep an original courtesy. But he asserted a constant reformation in evil tradition. He pursued a rationality not to be tied a formality, and he had also a flexibility to recognize real customs.

### I. 서 론

조선 시대는 성리학적 유교 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제양식이 형성되어 갔으므로, 조선 시대의 복식 현상 역시 유교 사상적 체계 하에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의 유학은 이학(理學), 예학(禮學), 실학(實學)시대로 3분할 수 있는 데<sup>1)</sup>, 실학은 임란과 호란이라는 양란을 겪은 후 비관정신을 가지고 현실을 직시한 지식인에 의해 17~18 세기에 걸쳐 제시된 것으로, 형이상학적 학문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학문적 반성을 추구한 학풍이었다. 이같은 학풍은 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복식 제도에 있어서도 내적인 변화 요인으로 작용하게

學), 예학(禮學), 실학(實學)시대로 3분할 수 있는 데<sup>1)</sup>, 실학은 임란과 호란이라는 양란을 겪은 후 비관정신을 가지고 현실을 직시한 지식인에 의해 17~18 세기에 걸쳐 제시된 것으로, 형이상학적 학문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학문적 반성을 추구한 학풍이었다. 이같은 학풍은 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복식 제도에 있어서도 내적인 변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조선 후기 복식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한 계기가 되었다.

조선 후기에 등장한 실학의 성향은 경세치용(經世致用), 이용후생(利用厚生),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세파로 분류되어지기도 하지만, 이들이 지향하는 바는 실용과 실증, 현실 중시, 자주적인 학풍 등이라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초기 실학파는 곧 경세치용파로서 민족문화의 자신감을 기초로 하여 근래 중국과 서방 문화의 비교와 수용 속에서 전통 문화에 대한 갱신을 제기하였다<sup>2)</sup>. 그리하여 이들은 고대 유교 경전에 대한 한대(漢代) 이래로 부터 명(明)청(淸)까지의 중국 유학자들의 해석에 회의를 품고 자체의 고증을 통해 원시 유학의 본 정신을 살려내려 하였다. 또한 지식을 탐구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 자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에 행하기 위한 것이며, 이 지식은 구체적으로 현실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제도의 개혁에 치중하였다<sup>3)</sup>.

본 연구의 목적은 이미 줄고<sup>4)</sup>에서 고찰한 이용후생파와 실사구시파의 실학적 복식관에 뒤 이은 것으로 경세치용파의 실학적 복식관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초기 실학파가 제시한 복식제도에 내포되어 있는 실학정신을 이해하고, 실학 초기에 드러나는 복식 개혁론의 특성을 살펴, 실학적 복식관이라는 복식사적 의의를 밝혀 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의 내용은 실학 초기 사상가들의 개혁사상중 복식에 대한 개혁론을 한백겸(韓百謙: 1552~1613), 유형원(柳馨遠: 1622~1673), 이익(李穡: 1682~1763)의 저서를 중심으로 이들의 복식관을 비판적 고증학적 학문자세 및 실제적 실용적 합리적인 면을 추구하는 실학적 복식관이라는 측면으로 고찰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고찰된 복식제도의 개혁론은 초기 실학파의 저술에 한정된 것이므로 사회전반의 복식현상을 설명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이들의 개혁의지가 정치적으로 현실에 반영되지 못하고 개인의 가문이나 문벌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많으므로 사회전반의 복식문화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을 밝혀둔다.

## II. 한백겸의 실학적 복식관

한백겸은 유형원, 이익과는 달리 16세기 중엽에서

17세기 중엽에 이르는 실학의 준비기에 해당되는 인물로서 이 시기에는 서양 문물이 소개되기 시작하고 양명학이 받아들여지고 백과사전과 사신키 시작하는 때이다<sup>6)</sup>. 그는 17세기 중엽에 실학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때보다 앞선 시기의 인물로서 때로 실학파에서 제외되기도 하였지만 그의 학문태도가 의리를 본원으로 하고 현실과 접하여 있어 실제성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실학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sup>7)</sup>.

그의 문집으로는 구암유고(久菴遺稿)와 동국지리지(東國地理志)가 있으며, 구암유고는 내용이 다양하고 비판적 안목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그의 학문 내용과 태도를 잘 보여준다.

구암유고의 내용은 예(禮)에 관한 것, 상수학(象數學), 경서(經書), 역사에 관한 것으로 나눌 수 있으며, 예에 관한 글 중에는 심의설(深衣說)이 수록되어 있어 의복에 관한 그의 실학적 사고를 잘 반영하고 있다. 즉 그는 심의설에서 이전까지의 심의제도에 대한 주소(註疏)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심지어는 주자(朱子)의 견해에까지 의문을 제기한 뒤, 예기의 원뜻을 탐구하여 심의 본래의 모습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처럼 경전을 근거로 하여 선유(先儒)들이나 주자의 견해라도 의문이 있으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비판적 학문태도와 문헌태도와 문헌 고증에 입각한 실증적 학문 방법을 그를 실학의 선구자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sup>8)</sup>.

이제 그가 제시한 심의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실학적 정신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먼저 그는 심의제도에 대한 첫머리에서 다음과 같이 의문을 제기하여 비판적 실증적인 면을 추구하는 자세를 보여준다.

“심의의 제도는 예기 본편 및 옥조(玉藻)에 실려 있다. 명백하고 간단하여 본래 깨닫기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주석가들이 의견을 왜곡시키고, 복잡하게 파고들어 마침내 경문의 본 뜻을 흐리게 하였다. 대개 주자가 만년에 입었던 것은 가례(家禮)와 같지 않았으니, 필시 정설이 있었을 것이나 지금 그 저작들에는 명확한 논증을 볼 수 없다. 겨우 제자인 채(蔡)·양(楊)씨의 설이 있는데 당시에도 상세하게 듣지 못했음을 한탄하고 있다.”<sup>9)</sup>

즉 그는 주자가 착용한 심의가 가례의 제도와 다르는데 의문을 품었으며 또한 여러 주소(註疏)의 잘못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비판 의식하에 예기에 기록된 심의제도 본래의 뜻을 탐구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예기 본문의 속임(續衿)은 양옷깃(襟)이 마주 대하여 겨우 이어지는 것이며, 구변(鉤邊)은 좌우가 열리지 않도록 결뉴(結紐)로 거는 것이라 하여 옷깃이 마주보는 대금(對襟)양식을 만들었다. 또 곡겁(曲袷)은 상복의 활중(關中)제도와 같이 옷깃 주위를 네모나게 재단한 후 2촌의 검은 견으로 연(緣)을 두르는 것이라 하여 네모난 모양의 깃 곧 방령(方領)양식의 심의를 만들었다. 이 제도는 당시 유학자들에게 인정받지는 못하였지만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후 실학자중 유형원(柳馨遠)이 반계수록(磻溪隨錄)에 한백겸의 심의설 전문을 수록하면서 그의 설에 따른다고 하였으나, 이덕무(李德懋: 1741~1793)는 청정관전서(淸莊館全書)에서, 이규경(李圭景: 1788~?)은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다만 하나의 의복으로 입을 만하다는 견해를 보였으며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은 의례문해(疑禮問解)에서, 서유구(徐有渠: 1764~1845)는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에서 한백겸이 합부로 일설을 만들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19세기에 이르러 허전(許傳: 1797~1886)과 박규수(朴珪壽: 1807~1876)는 다시 방령양식의 심의를 만들었으며, 이 새로운 양식의 심의는 그 후 유학자들에게 널리 착용되었으니, 한백겸의 심의제도는 바로 이 제도를 형성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10)</sup>.

또 그는 자신이 해석한 심의제도대로 만들어 시험하여 보고 그 옷이 입기도 좋고 행동하기에도 편안함으로 마땅히 옛날이나 오늘날에도 입을 수 있는 것이라 하여 시험적이며 실제적, 합리적인 면을 추구하는 실학적 사고를 보여준다.

그리고, 심의제도에 비추어 볼 때 상복(喪服)의 깃(領)과 설(衿)제도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역시 연구하여 옛 제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복의 깃과 설에 대하여는 선유의 정설이 있으므로 감히 합부로 말할 수는 없으나 심의의제도로 추측하면 역시 의혹이 없지 않다. 다행히도 예를 좋아하는 군자가 있었으니 여기에 의지하여 의문을 일으키고 세밀히 이해하는 단서로 삼는다면 옛제도를 되찾는 데에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sup>11)</sup>

이상 한백겸이 제시한 심의제도를 통하여 그의 실학적 사고의 특징을 살펴보면 선유와 주자의 해석에까지 의문을 품고 원전을 연구하여 본뜻을 파악하고자 하는 비판적인 학문태도와 탐구한 내용을 시험하여 실제적이

고 합리적인 면을 추구하는 자세를 들 수 있다.

### III. 유형원의 실학적 복식관

유형원은 이익과 더불어 17세기 중엽에서 실학의 발아기에 해당하는 인물로서, 그가 관심을 두었던 분야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들로 정치 경제 역사 등을 실증적으로 연구하고 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반계수록(磻溪隨錄)은 이러한 주장을 기록한 것으로서 급진적이진 않지만 진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계수록에 수록된 의관제도의 개혁안은 관(冠)과 건(巾), 첩리(貼裡), 심의(深衣), 족두리, 관리복(官吏服) 등에 대한 내용에 한정되고 있는데, 그 개혁안은 서두에서 밝혀 놓았듯이 중국제도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전제하에 서술된 것이다. 따라서 중국제도에 따른다는 말 자체만을 본다면 비자주적인 태도로서 그를 모화사상에 젖어 있는 한 유학자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국제도를 따르다는 말의 의미를 당시의 중국 제도를 일방적으로 따르다는 것이 아니라 의관 본래의 제도 즉, 근본이 되는 제도를 회복한다는 의미로서 이는 곧 실학의 학문적 특성이 초기 유학에의 복고를 의미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하겠다.

유형원이 제시하고 있는 복식제도 개선안은 독자적인 개량안이라기 보다는 그보다 앞선 시기에 명(明)에 다녀와 중국의 문물을 소개한 중봉(重峯) 조헌(趙憲: 1544~1592)의 글에 의거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중국의 제도를 본받자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고 의관제도중 제도가 변화된 것은 옛제도로 돌아가도록 제안하거나 새로운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유형원의 의관 제도론에서 그의 실학적 사고를 찾아 본다면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겠다.

#### 1. 인문(人文)과 법상(法象)에 맞는 복식제도

유형원은 의관제도에 대한 서두에서 의관제도는 일체 중국제도에 따라야 하는데, 그 이유는 중국제도가 인문(人文)과 법상(法象)에 맞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12)</sup>.

인문에 맞다는 의미는 인류의 질서에 맞다는 뜻으로서, 당시의 사치스럽고 비합리적인 의관제도를 검소한 양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인문에 맞도록 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의관제도를 중국 제도에

따라야 한다는 조헌의 제안에 동의하면서 그의 글을 인용하여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그 하나는 립(笠)을 관건(冠巾)으로 대용하자는 제안으로서 제층에 따라 건을 사용함으로써 경제적인 손실과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하여 조헌의 글을 인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귀천을 막론하고 다 립(笠)을 쓰므로 공연히 낭비하고 있는데, 만일 중국 제도에 따라 아전과 선비는 항상 건을 쓰게 하고 서민은 모자만을 사용토록 하면(토산품에 따라 물들인 모시베나 물들인 마포로 만들고 꼭 모피나 비단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 가난한 사람이 돈을 낭비하면서 립을 구입할 걱정이 없게 될 것입니다.”<sup>13)</sup>

또 부인의 족두리를 없애고 역자(鍍子)로 대신하도록 제안하고 있는데 이 역자는 중국의 부녀관으로서 조헌이 소개한 글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sup>14)</sup>. 즉 중국의 역자 제도는 철사나 대나무에 건을 싸거나 또는 건을 말아 수파(首帕)를 하는 것으로서 신부가 출가할 때는 칠보로 단장하기도 하는데 바로 세속에서 말하는 화관이라고 하였다. 조헌은 이 역자가 장식이 검소하고 절약하는 풍속이 된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소개된 중국의 역자로 족두리를 대신하고자 한 유형원의 의도도 역시 절용하는 풍속을 이루고자 한 데 있었다고 하겠다.

또 중국의 제도는 법상에 맞기 때문에 이에 따라야 한다고 하였는데, 법상에 맞다는 것은 곧 법칙과 형식이 바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외관제도가 법상에 맞는 대표적인 예는 관복을 들 수 있겠다. 그런데 당시 우리 나라에는 지방관리의 예복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지방관리의 의복을 서울 관리와 같게 해야 한다는 조헌의 상소에 대해 유형원도 공감하여 같은 주장을 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지방의 아전들은 모두 예복이 없으니 너무나 볼품이 없습니다. 평양(平壤)과 의주(義州) 동지의 아전들은 복장이 서울 기관에 있는 아전들과 비교적 같습니다. 기타 고을에서도 이와 같이 개조하게 한다면 아무리 하급에 있는 아전일지라도 공손하게 모두 자기의 예복을 입으며 괴상하고 속된 폐습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sup>15)</sup>

이처럼 그가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한 복식제도를 대부분은 사치스럽고 비합리적인 것을 검소하고 합리적인 양식으로 변화시키고 법상에 맞도록 제도화하지는는데 있

었다.

## 2. 옛제도의 회복

유형원은 복식제도를 개혁하는데 있어서 그 근거를 옛제도 혹은 옛법에 두었다. 이같은 입장에서 제시된 외관 제도의 내용으로는 공복(公服)속에 맞추어 입던 첩리(貼裡) 제도가 없어진 것을 고쳐 다시 공복속에 첩리, 광대(廣帶)를 착용하여 옛제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옛날에는 공복속에 첩리를 입은 것 같은데 이는 속칭 고도첩리(固道貼裡)로서 곧 융복이다. 혹 첩고(疊鼓)와 첩종(疊鐘)이 있을 때에 백관이 곧바로 목적지로 나아가 공복을 벗게 되면 갈아입지 않아도 바로 융복 차림의 편안함을 얻게 되다. 이것은 대체로 편안한 때에도 위험을 망각하지 않는다는 뜻에서이다. 지금은 이 제도가 없어졌다. 지금 생각으로는 공복속에 심의를 착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sup>16)</sup>

즉, 공복속에 첩리를 입은 본래의 제도로 돌아간다는 것은 편안한 때에도 위험을 잊지 않는 본뜻을 간직한다는 의미이며, 단순한 복고주의나 옛제도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은 아니다. 그래서 그는 혹 중국제도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마땅히 본래의 옛제도를 참고하고 연구하여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니 이는 근본을 생각하며 유교의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한 실학적 사고와 부합된다. 그리고 공복속에 첩리를 입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공복안에 심의를 입는 것이 더 낫겠다고 조심스럽게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 3. 새로운 제도의 제안

유형원은 옛제도가 변화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하지만, 보다 나은 대안이나 개선책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를 제안하고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공복안에 다시 첩리를 입어 옛제도를 회복하는 것보다 새로운 대안 즉 개선책으로 공복안에 심의를 입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가 첩리보다 심의가 더 낫다고 생각한데는 아마도 심의의 용도와 그 제도에 내포되어 있는 유교적 의미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심의의 용도를 살펴보면, 예로부터 심의는 천자(天子)의 양로(養老) 예복으로부터 사대부와 서민의 예복, 부녀자의 흉복으로 길흉사에 통용된 의복이었다. 즉 이 심의는 편안할 때와 위급할 때에 모

두 통용되는 의복으로서 첩리와 마찬가지로 편안할 때 입어서도 위급할 때를 대비하기에 충분하였던 것이다. 또한 심의는 주자에 의해 유학자의 예복으로 천거된 이래로 유학자에게 있어서 이 심의에 대한 경외심은 대단하였으며, 유교의 이념을 담고 있는 심의를 공복속에 입는 것은 지극한 예의 표현으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종종(1506~1544) 때에 편전에서 편복을 입는 것이 어떠한 질문에 대해 조광조가 '외관을 다정히 하고 시선을 존엄하게 하라 하였으니, 의관을 경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심의같은 옷을 입으면 되지만 철릭같은 옷은 입을 수 없습니다.'<sup>17)</sup>고 한 기록을 본다면 첩리를 예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의복에 불과했으며, 심의는 첩리 이상으로 예를 온전히 갖는 의복으로 평가받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심의 제도에 대하여 반계수록에는 한백겸의 심의 제도를 따른다고 하여 그 전문을 수록하고 있는데, 다만 심의제의 그림에서 전체적인 형태는 비슷하지만 깃, 연, 소매 등의 국부적인 부위에 조금 차이가 난다. 이것은 아마도 그가 한백겸의 심의제 그림을 그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모양이 바뀐 것이라기 보다는, 실제로 그 자신이 심의를 제작하여 입고 그 심의의 모양을 그리는 과정에서 차이가 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상에서 유형원의 실학적 사고가 복식개혁론에 나타난 바를 정리하여 보면 첫째 인문과 법상에 맞는 복식 제도를 추구하되 그 방법으로서 중국복제를 따른다고 하였으며, 둘째 전통복식 제도로의 회복을 추구하여 의복제도의 본뜻을 되찾으려 하였으며, 셋째 보다 나은 개선책이 있을 경우에 제도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IV. 이익의 실학적 복식관

이익이 활약한 18세기 전반은 200년에 걸친 당쟁과 반복된 정권교체를 거쳐 점차 노론일당의 전권시대로 들어가는 시기였다. 그 결과 정치적 불안과 부의 독점으로 사류(士類)들이 경제기반인 토지를 잃게 되었고 유통경제의 발달에 따른 화폐의 통용으로 사치의 풍이 조장되어 그 몰락은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사회는 무질서와 혼란으로 빠져들었다<sup>18)</sup>.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직면하여 이익은 경세제민을 학문의 목표로 하고 실용과 실증을 학문의 방법으로 삼

아 주자집전을 대담히 해부하고 그 불합리한 해석들을 비판하여 이 지식들이 구체적으로 현실에 활용되도록 하였다.

이같은 이익의 실학적 사고가 그의 복식론에 나타나고 있는 바를 고찰하여 보면 먼저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오던 복식제도에 대한 제유(諸儒)의 해석에 회의를 품고 고문헌의 고증을 통하여 실증적인 면을 중시하는 연구자세로 본뜻을 밝혀 내려 하였다. 또 복식제도는 예를 갖추는 하나의 형식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므로 그의 복식론에는 실학화된 예를 추구하는 정신이 담겨 있다. 그의 실학적 예가 구체화되어 나타난 모습은 전통과 근본된 예를 추구하는 자세와 검소지향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자세, 그리고 현실풍속을 인정하는 자세 등으로 고찰하여 볼 수 있다.

이상의 관점에서 그의 실학적 정신이 복식론에 반영된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비판적 실증적 자세

실학자들은 형이상학적인 성리학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역사와 현실에 관심이 커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연구하였다. 그리하여 복식에 대한 부분에서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나타내어 실증적, 고증적 연구방법으로 복식제도의 잘못을 비판하고 본제도를 바르게 회복하고자 하였다.

당시 복식제도에 대한 비판적이며 실증적인 면을 지향하는 태도는 실학파의 학문적 태도와 부합하는 것으로서 백의금령(白衣禁命), 심의의 지척(指尺), 대상(大祥)에 쓰는 관(冠), 및 부인의 연지와 반지에 대한 견해에서 밝히 드러나고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익은 우리 나라 백의의 풍속에 대하여 누누이 백의금령이 내려진 내력을 살펴면서 목(木)이 금(金)에 제어를 받는다는 것이 이치가 맞지 않다는 견해를 여러 실증적인 자료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즉 고려말기에 백의금령이 내려진 것은 여전히 백의가 널리 착용되었을 입증하는 것이며, 그 후 400여년이 넘도록 나라는 멸망되지 않았으니 지금 말세에 이런 금령을 내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냐고 반론하고 있다. 또 은나라가 흰 빛을 숭상하면서도 500년을 누렸고, 그 후 주(周)나라와 기자(箕子)도 흰색을 숭상하였으며 우리 나라도 흰색을 숭상하면서 또 천년이 넘도록 항국하였으니 이상

에서 볼 때 목(木)이 금(金)에 절제 받는다는 이치가 어디 있겠느냐고 반박하고 있다<sup>19)</sup>.

또 심의제도에 사용되는 지척에 대하여도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비판하여 주척(周尺)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의의 제도를 사람의 생김새에 따라 길게도 짧게도 넓게도 좁게도 하는 치수로 마련한 까닭에 이 지척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사람의 생김새는 몸집이 호리호리하면서 키가 짧은 자도 있으며, 손가락이 짧은데 키는 큰 자가 있고 손가락은 긴데도 키가 짧은 자가 있으니, 이 지척이 꼭 법으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나는 옛날 이른바 자라는 것은 즉 주척(周尺)을 가리킨 것이라고 여긴다.”<sup>20)</sup>

본래 예기의 심의제는 의복 각부위의 치수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나 척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래서 주자는 이 척도를 지척이라 하였으며 사마광(司馬光)은 주척이라 주장하였는데 주자학을 신봉한 조선의 유학자들은 주자가례에 따라 지척을 심의제에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지척이란 신체의 크기에 따라 손가락의 크기도 비례한다는 전제하에 제작된 척도로서 1촌은 중지(中指)의 가운데 마디 길이로서 신체의 크기에 따라 변하는 가변적인 척도이며, 주척 역시 신체를 기준으로 정하여진 것이지만 치수가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이익은 손가락과 키가 비례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지척을 심의제도의 척도로 삼는 것은 옳지 못하며 그 대신에 주척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척도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몸집에 알맞게 해야 한다고 하여 실제적인 측면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게된다.

대상(大祥)때 쓰는 관(冠)에 대하여 주자는 흑경백위(黑經白緯)를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주자가 경서(經書)를 주석하면서 공영달의 소(疏)에 잘못 인용된 것을 그대로 답습하여 오류를 범한 것이었으며, 그 후 퇴계(退溪)와 고봉(高峰)의 세대에도 이를 따라 고치지 않았으니 이는 의(義)에 해로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sup>21)</sup>.

부인들이 얼굴에 찍는 붉은 연지나 반지는 옛날 첩이나 궁인이 천자(天子)를 모시는데 징표로 사용하던 것이며 또 반지는 호속(胡俗)으로서 그 유래가 아름답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역대를 내려오면서 혁파하는 자가 없음을 한탄하면서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므로 개혁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sup>22)</sup>. 연지는 당시 궁중연회에서 기악(妓樂)이 연주될 때 기녀들이 연지를 찍는 풍속이 여전하였다는 기록이 보이는데<sup>23)</sup> 일반 부녀자들에게도 이 같은 풍속이 퍼져 있었던 것 같다. 이같은 비판적 자세는 맹목적으로 중화를 따르고자 한 모화사상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민족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지주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외에도 이익은 백갑(白甲), 민자건(民子巾), 홀(笏), 패대(珮袋), 초립(草笠)과 홍의(紅衣) 등 여러 종류의 의복제도에 있어서 실증적이며 고증학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오류를 지적하고 비판하여 자신의 주장을 밝히고 있다.

## 2. 근본된 예의 추구

이익은 예학자를 비판하여 경제치용의 학풍을 전개하였지만 그 역시 예학에 관심이 깊었으며 예학을 학문화하고 생활화하였다. 그리하여 사대부를 중심으로한 주자가례를 학문적 변종을 통해 비판하고 실증과 실용적인 방법 등을 통해 사서인(士庶人)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예학 체계를 수립하였는데 배상현은 이를 실학화한 예학이라 해석하고 있다<sup>24)</sup>.

이익은 예란 근본을 잊지 않는 것이라 정의하였는데<sup>25)</sup> 복식은 예를 갖추는 하나의 형식으로서 예를 갖추기 위하여는 근본된 옛제도를 회복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신분제에 따라 복식에 구별을 두어 상하신분과 위계를 분화하여 그 질서속에서 하나로 통합시키는 예를 실현하고자 하였다<sup>26)</sup>. 이러한 측면들은 자칫하면 옛것으로 돌이키려는 복고론이나 신분을 구별하여 계급적 규제를 고수하려는 전근대적 사고로 인식되기 쉽다. 물론 문무왕이 중화의 제도로 복제를 개혁한 업적을 높이 평가하는 등<sup>27)</sup> 소중화의식에 젖어 있는 면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옛제도의 복귀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제도의 개혁 역시 과감하게 주장하고 있어 그가 주장하는 옛제도의 회복은 무조건적인 복고가 아니라 예(禮)를 나타내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익은 복식에 있어서 근본된 예가 지켜지고 있는 경우로 옛제도가 계승되고 있는 대(帶)와 방립(方笠), 백의의 풍속을 들고 있다.

맨 처음 의복이 생겼을 때는 의복을 그냥 둘러서 묶었는데 후에 고름이나 혁대를 사용하게 된 것은 옛모습을 계승한 것으로서 근본을 잊지 않은 예의 한 흔적이

라고 보았다<sup>28)</sup>.

또 방법은 옛날 고구려인이 쓰던 절풍립(折風笠)의 유제(遺制)라고 하여, 상주된 자가 이 제도를 존속시켜 최질(哀經)과 마찬가지로 삼은 것은 근본된 예를 잊지 않는 것이라 하였다<sup>29)</sup>.

우리 나라 백의의 풍속 역시 악과 예에 합치되는 것으로서<sup>30)</sup> 근본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며 화려한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하는 것이므로 계속 지켜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또 신분에 따라 복식에 구별을 두어 예를 지키고자한 경우에는 임금과 조관의 복식에 금관자 옥관자를 동일하게 다는 것은 비록 그것이 옛법이라 할지라도 상하의 등분이 문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임금만 쓰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31)</sup>.

이밖에도 복건(幅巾), 엄(掩), 발개(髮髻), 훗(笏), 난삼(欄衫), 계(髻)의 근본 유래를 연구하여 현 제도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본 제도를 밝히고자 하였다.

### 3. 검소 지향적 개혁

이익은 '법이 오래면 폐해가 생기며 폐해가 생기면 변경시키는 것은 필연적인 것'<sup>32)</sup>이라 하여 전통에 대한 부단한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유교전통문화 전반에 대한 개혁을 주장한 것은 아니며 폐해가 있는 것에 한정되어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으로 복식제도에 있어서는 실용과 검소를 지향하고 사치를 타파하는 복식 개혁을 주장하였는데 이같은 근검사상은 이익의 실학정신에 있어서 예학 전반을 지배하는 사상이다. 또한 그는 상서(祥瑞)란 실용의 가치에 있는 것이고 모양과 빛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중요시하는 실학적인 면을 보여 주고 있다<sup>33)</sup>. 그리하여 유가의 형식적인 허례허식을 방지하고자 주자가례와는 다른 사서(士庶)의 예로서 성호예식(星湖禮式)을 지었으며 행례(行禮)에 있어서 모두 검소론으로 일관하고 있다<sup>34)</sup>.

이익은 그 자신이 천성적으로 사치를 싫어하여 어려서부터 새옷입기마저 기피하였으며<sup>35)</sup> 검소하고 소박함을 몸소 실천하기 위하여 평시에 말을 타고 멀리가지 않을 때는 늘 나막신을 사용하였다<sup>36)</sup>. 또 민풍이 순박하고 예속을 잘 지키며 근검절약하는 영남을 이상향으로 기려 당시에 선비가 고운 삼미투리도 부끄럽게 여기는 자가 많았지만 영남지방에서는 집에서 짚신을 신

고 외출 시에만 미투리를 신는 그 검소함을 모범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sup>37)</sup>.

그가 검소를 지향하면서 복식제도를 개혁하고자 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먼저 갖끈이 호박(琥珀), 대모(玳瑁), 수정(水晶), 금패(錦貝) 따위로 만들어 사치해졌음을 지적하면서 조선초기에 연자영(蓮子纒)으로 만든 검소한 풍속을 소개하고 있다<sup>38)</sup>.

또 중세 이전에는 귀척부인도 출입시 너울(羅衣)을 사용하였는데 당시에는 궁인의 종들만 이를 사용하고 옥교(屋簷)를 사용하는 이가 많아 세속 풍속이 사치하게 됨을 지적하고 있다<sup>39)</sup>.

그리고 사람들이 고운 비단을 즐겨 입으므로 그 사치로 인하여 천하가 가난하게 될 것이라고 한탄하면서 고운 비단을 쉽게 떨어지며 여름에는 땀에 젖어 몸에 붙으니 거친 것(삼베, 모시 따위)만 못하고 남의 눈에 좋게 보일 뿐이며 자기 몸에는 해롭고 공력이 들어 값이 비싸는 등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sup>40)</sup>.

염료에 있어서는 토홍(土紅), 목홍(木紅), 진홍(眞暎)중에 모두 홍람(紅藍)을 사용한 진홍을 선호하여 토홍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처럼 홍람만을 사용함으로 교만과 사치풍조가 팽배하여 거친의 구별이 없고 물자의 허비가 많은 폐단을 지적하면서 복색을 바꾸어 새제도를 만들어 이 제도가 옛것에도 맞고 지금에도 알맞은 뿐만 아니라 물자 절약에도 유익하다고 하였다<sup>41)</sup>.

또 사치스러운 발개(髮髻)의 근본유래를 연구하여 건귀(巾櫛)제도와 유사하게 개혁하여 실과 비단 따위에 검은 칠만해서 꾸미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법으로 금할 필요없이 가발 만들어 파는 자만 금하면 가난한 집안은 먼저 즐겨 순종할 것이요 차츰 대동지풍(大同之風)이 이루어질 것이라 하여<sup>42)</sup> 사치문제는 법으로 금하여 해결하기보다 근원을 제거하여 백성이 즐겨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상에서와 같이 사치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현실에 대하여 '다만 눈앞에 번쩍이는 것을 자랑할 뿐 다른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는'<sup>43)</sup> 사람들이 마음을 지적하고, 또 위정자들이 사치를 금하는 법령을 세우지만 이것이 차츰 무너져 버리는 현실을 안타까와 하였으나<sup>44)</sup> 한편으로는 사치를 금지하기 위해 화폐를 없애는 것이 가장 낫다고 생각하여<sup>45)</sup> 화폐의 유통에 그 원인을 돌리는 비근대적인 사고의 단면도 보이고 있다.

나아가 이익은 사회개혁에 있어서 정계에서 소외된

입장에서 현실 정치를 비판하고 검약의 한계점을 인식하여 한갓 검소함만으로 나라를 중흥시킬 수는 없으며, 어진 선비를 등용하는 것이 바로 공을 이루는 것이 된다고 지적하여, 사치나 검약의 문제는 나라를 부하게 할 수는 있으나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나라를 바르게 하기 위해 인재를 등용하는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46)</sup>.

#### 4. 현실풍속의 인정

이익의 예학은 형식적인 의례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합리성을 따르려고 하였으며 인정에 바탕하여 알맞게 절제함으로써 고식적으로 예법에 매이는 예학자들과는 다른 것이었다<sup>47)</sup>.

당시 유가(儒家)의 예는 사대부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서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는데, 사서인(士庶人)이 모두 이에 따르고자 하였으므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랐다. 그래서 이익은 고금의 예를 절충하고 사서의 예를 짐작하여 새로운 예서를 편찬하였으며, 안정복은 성호의 예서에 대하여 옛날 번문(繁文)을 말라 간결하게 하였고 오늘에 소략한 절은 참작해서 전아(典雅)함을 따르니 위로 국법에 거스리지 않고 아래로 인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여 그 현실성을 인정하였다<sup>48)</sup>.

복식제도에 있어서 이처럼 현실풍속을 인정하며, 제도에 엄매이지 아니하는 현실적인 융통성을 보이고 있는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실풍속을 인정하는 예로 부인의 초상에 사용하는 여모(女帽)를 들고 있는데 이것이 엄(掩)과 비슷하지만 질질마다 정해진 제도가 없이 만들어 각각 모양이 달랐다. 본래 부녀의 초상에는 복상투에다 비녀를 꽂지 않고 끈만 사용하는데 여모라는 제도가 도중에 생긴 것이었다. 그래서 이익은 엄의 옛제도를 참고하여 새제도를 만들어 규례로 삼도록 제시하고 있다<sup>49)</sup>. 이처럼 여모의 경우 옛것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제도를 만들게 된 것은 옛것을 참고하면서도 현실풍속을 인정하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 가례에 3년상을 당한 상제도 거친 삼미투리는 신을 수 있는데 풍속을 벗죄으로 성글게 삼은 짚신을 신는데 대하여 이는 '상(喪)이 애(哀)에 지나친다'는 뜻에 해로울 것이 없으니 풍속에 따르는 것이 무방하다 하여 당시의 풍속을 인정하고 있다<sup>50)</sup>.

부인복의 경우에도 소매가 좁고 옷자락이 짧은 것은

복요(服妖)이며 그 자신도 좋게 여기지 않지만 이것이 편리함으로 고쳐지지 않는듯하며<sup>51)</sup> 또 대동지풍속(大同之風俗)이니 어쩔 수 없다하여 현실풍속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다<sup>52)</sup>.

그리고 예에 어긋나도 실제적인 면을 중시하는 실학적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즉 상중(喪中)의 예법에 있어서 소용되는 물건이 없는 지방에서는 다른 것으로 대용해도 된다는 것을 옛문헌에서 증거로 삼고<sup>53)</sup>, 또 옛부터 스승에 대한 복(師服)에 일정한 제도가 없이 본인에게 맡겨둔 것은<sup>54)</sup> 예에 엄매이지 아니하는 융통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 보았다.

또 관례(冠禮)에 있어서 난삼(爛衫)을 중국저자에 가서 사 오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주자가 지금 있다면 반드시 풍속에 따랐을 것이며 멀리 가서 사 쓰지는 않을 것이라 하여 현실적인 면을 중시하였다. 그리하여 이익은 자신의 집안에 쓰는 관례를 만들어 처음은 심의(深衣)와 복건(幅巾), 두번째는 유건(儒巾)와 청상(靑衫), 세번째는 입자(笠子)와 도복(道服)을 입도록 하였고 이것도 갖추수가 없다면 입자와 도복으로 한번만 입어도 무방하다<sup>55)</sup>하여 허례허식을 버리고 간결하고 구하기 쉬운 것으로 하여 성의를 다한 예를 행하는 것을 중요시 하였다.

## V. 결 론

본 연구는 경세치용파라 불리는 초기 실학파중 한 백경, 유형원, 이익을 중심으로 이들이 근대적 의식을 갖고 제시한 복식제도에 대한 제 논의를 살펴본 것이다. 이들이 제시한 복식제도론에 내포된 실학정신과 복식개혁론의 특징을 중심으로 그 속에 내재된 실학적 복식관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백경은 선유와 주자의 해석에까지 의문을 품고 원전을 연구하여 본 뜻을 탐구하고자 하는 비판의식과 문헌적 고증에 입각하는 학문적 태도 및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면을 추구하는 자세를 보여준다. 그리하여 심의(深衣) 제도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대금(對襟)과 방령(方領)양식의 심의를 제작하였는데, 이 제도가 설득력은 부족하지만 이후 19세기에 이르러 다시 등장한 방령양식 심의의 제작에 계기가 되었다.

둘째, 유형원은 의관제도의 개선을 제안하면서 먼저 인문(人文)과 법상(法象)에 맞는 복식제도를 추구하여



그 방편으로 중국제도를 본받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검소하고 합리적인 복식제도를 추구하여 립(笠)과 부인의 족두리, 지방관리의 복식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또 복식제도 개혁의 근거를 옛제도에 두어 공복(公服)속에 첩리(貼裡) 착용을 다시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복고주의가 아니며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의 본뜻을 간직하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옛제도로의 복귀는 곧 근본된 예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원시유학에의 복귀를 주장하는 실학적 사고와도 부합되는 것이다.

나아가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보다 나은 개선안이 있을 때는 새로운 제도를 제안하여 공복안에 첩리를 입는 것보다 심의를 입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이익은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오던 복식제도에 대한 제유의 해석에 회의를 품고 본제도를 바르게 회복하기 위하여 비판적이며 실증적인 면을 중시한 고증학적 연구자세로 백의금령(白衣禁令), 심의의 지척(指尺), 대상(大祥)의 관(冠), 부인의 연지와 반지 등에 대한 복식제도를 고찰하고 있다. 또 예란 근본을 잊지 않는 것이다. 하여 여러 복식제도에 있어서 옛제도의 회복을 주장하였으며, 옛제도가 계속되고 있는 대(帶)와 방랍(方笠), 백의의 풍속에서 예가 지켜지고 있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폐해가 있는 전통에 대하여는 부단한 개혁을 주장하여 갓끈, 옥교(屋轎), 고운 비단, 열료, 발개(髮髻) 등 사치한 것에 대하여 개혁하고자 하였다. 특히 그의 예론에 있어서 일관된 사상은 검소론으로서 그 자신이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였으며, 사치는 법으로 금하여 해결하기보다 근원을 제거하여 백성이 즐겨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검약의 문제는 나라를 부하게 할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나라를 바르게 하지는 못한다고 보아 사회개혁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보다 근본적인 사회제도의 개혁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형식적인 의례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합리성을 추구하여 부인의 초상에 사용하는 여모(女帽)나 상제의 쥘신, 부인복, 관례복등의 경우 옛제도에 적합하지는 않지만 현실풍속을 인정하고 상례나 관례에 있어 허례허식을 버려 실제적인 면을 추구하는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

이상을 통하여 초기 실학파에게서는 비판의식을 가지고 원전의 뜻을 탐구하는 고증학적인 학문자세와 복식

제도의 본뜻을 밝혀 근본된 예를 간직하고자 하는 정신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실질적이고 실용적이며 합리적인 면을 추구하는 실학적 복식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조선의 유교가 예학에 치중하면서 차츰 예의 근본정신에서 벗어나 형식에 치우쳐 예복이 발전하고 허례허식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대한 반동으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초기 실학파의 실학적 정신은 개인적이며 또 시대적 한계로 인한 전근대적인 사고의 단면 역시 보이고 있지만, 이들이 지닌 전통 문화에 대한 자주적인 개혁의 의지는 그후 북학파 등으로 이어지는 후기 실학파뿐 아니라 개화파에 이르기까지 외래문화에 대한 창조적인 수용의 정신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개화기 이후 복식의 변화가 서양 문화의 수용에 의한 개혁이라고 본다면 초기 실학자들은 전통 복식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하에서 스스로의 각성에 의해 새롭게 평가하여 개혁하는 정신을 지녔다는 점에서 그 정신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실학파의 이같은 자주적, 창조적 정신은 오늘날 끊임없는 변화의 위기를 겪고 있는 문화의 흐름을 바르게 인식하고 나아가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 참 고 문 헌

- 1) 현상운, 朝鮮儒學史, 玄香社, 171-184面, 1986.
- 2) 채미화, 經世致用派의 文化超越意識, 다산 학보 13, 115面, 1992.
- 3) 김용경, 星湖 哲學思想의 近代의 性格, 도원 유송국 박사 고회기념논문집 동방철학사상연구, 308面, 1992.
- 4) 정혜경, 실학사상기의 복식문화 I - 정약용의 문헌을 통한 고찰 -, 한국의류학회지 16 권 2호, 149-154面, 1992.
- 5) 정혜경, 실학사상기의 복식문화 II - 18세기 후반 복학사상을 중심으로 -, 한국의류학회지, 18 권 1호, 101-112面, 1994.
- 6) 천관우, 한국사의 재발견, 서울 : 일조각, 100-102面, 1974.
- 7) 정종술, 久庵 韓百謙, 실학논총, 전남대출판부, 314面, 1983.
- 8) 尹熙勉, 함백경의 학문과 <동국지리지> 저술동기, 農檀學報 63, 164面, 1987.
- 9) 韓百謙, 久庵遺稿, 深衣說, 悅話堂, 1972.
- 10) 정혜경, 深衣에 관한 研究,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논문, 78 - 84面, 1990.

- 11) 韓百謙, 久庵遺稿, 深衣說, 悅話堂, 1972.
- 12) 柳馨遠, 礪溪隨錄, 卷之二十五, 續編 上, 衣冠, 1769.
- 13) 柳馨遠, 礪溪隨錄, 卷之二十五, 續編 上, 衣冠, 1769.
- 14) 柳馨遠, 礪溪隨錄, 卷之二十五, 續編 上, 衣冠, 1769.
- 15) 柳馨遠, 礪溪隨錄, 卷之二十五, 續編 上, 衣冠, 1769.
- 16) 柳馨遠, 礪溪隨錄, 卷之二十五, 續編 上, 衣冠, 1769.
- 17) 朝鮮王朝實錄, 中宗十四年 七月.
- 18) 배상현, 星湖 李翼의 禮學思想, 泰東古典研究 10, 한림대, 367面, 1993.
- 19) 李瀛, 星湖僿設, 卷之二十一, 經史門, 景文社, 1981.
- 20) 星湖僿設, 卷之五, 萬物門, 景文社, 1981.
- 21) 星湖僿設, 卷之十三, 人事門, 景文社, 1981.
- 22) 星湖僿設, 卷之五, 萬物門, 景文社, 1981.
- 23) 星湖僿設, 卷之十五, 人事門, 獻仙桃, 景文社, 1981.
- 24) 배상현, 星湖 李翼의 禮學思想, 泰東古典研究 10, 한림대, 405面, 1993.
- 25) 星湖僿設, 卷之二十一, 經史門, 景文社, 1981.
- 26) 배상현, 星湖 李翼의 禮學思想, 泰東古典研究 10, 한림대, 381面, 1993.
- 27) 星湖僿設, 卷之十六, 人事門, 景文社, 1981.
- 28) 星湖僿設, 卷之十二, 人事門, 景文社, 1981.
- 29) 星湖僿設, 卷之五, 萬物門, 景文社, 1981.
- 30) 星湖僿設, 卷之二十一, 經史門, 景文社, 1981.
- 31) 星湖僿設, 卷之十, 人事門, 景文社, 1981.
- 32) 星湖僿設, 帛우록, 景文社, 1981.
- 33) 星湖僿設, 卷之十六, 人事門, 景文社, 1981.
- 34) 배상현, 星湖 李翼의 禮學思想, 泰東古典研究 10, 한림대, 381面, 1993.
- 35) 星湖僿設, 卷一 - 二.
- 36) 星湖僿設, 卷之六, 萬物門, 景文社, 1981.
- 37) 星湖僿設, 卷之六, 萬物門, 景文社, 1981.
- 38) 星湖僿設, 卷之五, 萬物門, 景文社, 1981.
- 39) 星湖僿設, 卷之六, 萬物門, 景文社, 1981.
- 40) 星湖僿設, 卷之六, 萬物門, 景文社, 1981.
- 41) 星湖僿設, 卷之十二, 人事門, 景文社, 1981.
- 42) 星湖僿設, 卷之六, 萬物門, 景文社, 1981.
- 43) 배상현, 星湖 李翼의 禮學思想, 泰東古典研究 10, 한림대, 377面, 1993.
- 44) 星湖僿設, 卷之六, 萬物門, 景文社, 1981.
- 45) 星湖僿設, 卷之三十, 論錢貨, 景文社, 1981.
- 46) 星湖僿設, 卷之二十一, 經史門, 景文社, 1981.
- 47) 배상현, 星湖 李翼의 禮學思想, 泰東古典研究 10, 한림대, 385面, 1993.
- 48) 배상현, 星湖 李翼의 禮學思想, 泰東古典研究 10, 한림대, 376面, 1993.
- 49) 星湖僿設, 卷之五, 萬物門, 景文社, 1981.
- 50) 星湖僿設, 卷之六, 萬物門, 景文社, 1981.
- 51) 星湖僿設, 卷之十, 人事門, 景文社, 1981.
- 52) 星湖僿設, 卷之六, 萬物門, 景文社, 1981.
- 53) 星湖僿設, 卷之十四, 人事門, 景文社, 1981.
- 54) 星湖僿設, 卷之十六, 萬物門, 景文社, 1981.
- 55) 星湖僿設, 卷之六, 萬物門.